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29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575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redacted]

피 고 1.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3.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4.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8. 21.

판 결 선 고 2015. 9. 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2014. 12. 16. 한 취득세 95,317,200원(가산세 28,917,2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8,203,72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29

시 [redacted]구청장이 2014. 12. 17. 한 취득세 94,287,790원(가산세 28,522,43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8,113,46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서울특별시 [redacted]구청장이 2014. 12. 18. 한 취득세 113,262,300원, 농어촌특별세 9,746,23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2014. 12. 22. 한 취득세 60,260,970원(가산세 18,334,46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5,187,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보통신 및 정보서비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하여 2012. 8. 23. 이 사건 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한 과점주주가 되었다.

취득일자	취득 주식수	취득가액	주식양도자
2012. 8. 13.	320,000주	2,300,000,000원	C
2012. 8. 23.	480,000주	7,500,000,000원	A, B

나. 이에 피고들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저축은행 소유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2014. 12. 16. 취득세 95,317,200원(가산세 28,917,2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8,203,720원을,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2014. 12. 17. 취득세 94,287,790원(가산세 28,522,43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8,113,460원을,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2014. 12. 18. 취득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29

113,262,300원, 농어촌특별세 9,746,230원을,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2014. 12. 22. 취득세 60,260,970원(가산세 18,334,46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5,187,56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다만,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가하여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이하에서 따로 살피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저축은행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로서 금융감독원의 권고·요구에 따라 제3자의 인수에 의한 방법으로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례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29

1) 금융감독원장은 2011. 4. 11. 이 사건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결과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이라 한다)이 하락하여 건전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저축은행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개선협약' 체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이 사건 저축은행은 2011. 4. 29. 금융감독원장에게 경영정상화계획서와 함께 그 충실한 이행을 통해 BIS비율을 2011년 6월말 7% 이상, 2011년 12월말 8%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개선협약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12. 4. 30. 이사회 결의를 거쳐 A 및 B가 보유하는 이 사건 저축은행 주식 480,000주를 14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2. 8. 13. 개최된 이사회에서 위 매매대금을 75억 원으로 감액하고, 추가로 C로부터 이 사건 저축은행 주식 320,000주를 취득하기로 결의한 후 2012. 8. 22.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저축은행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3) 금융감독원은 2012. 6. 28.부터 2012. 7. 27.까지 이 사건 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2012. 3. 31. 기준 BIS비율이 실제로는 -1.27%임에도 7.13%로 과대산정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2013. 5. 8. 이 사건 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및 과징금부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권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고, 2012. 7. 30.부터 한 달간 2명의 감독관을 이 사건 저축은행에 파견하였다.

4)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1. 9. 18. 7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6개월간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안을 의결하였고, 2012. 5. 6.에는 4개 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하였는데, 이 사건 저축은행은 위 각 조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내지 10호증, 을가 1, 2,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29

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2)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 특례법 제120조 제6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는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금산법 제10조는 금융위원회 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으로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적기시정조치를 당해 금융기관의 부실 정도에 따라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적기시정조치의 하나로 제7호에서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를, 제9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29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각 규정하고 있다.

3)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는 '제3자의 인수에 관한 명령'에 한정되지 않고, 그 형식(권고, 요구, 명령)에 관계없이 금산법 제10조에 따라 제3자가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감면규정은 법인의 주식 취득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행정조치에 따라 강제되는 경우에까지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예외조항이라고 할 것인데, 금산법 제14조, 제27조, 제28조 등에서 제10조 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행정처분,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요구 또는 명령'이 아닌 '권고'에는 강제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로 감면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이상,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대상은, 금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여러 가지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발하는 제3자의 인수에 관한 명령,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만이 이에 해당하고, 그 밖의 적기시정조치 항목에 관련되거나 그 내용이 단지 권고 등에 그쳐 위와 같은 명령 또는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 원고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상 '계약이전'과는 달리 제3자 인수의 경우에는 '요구' 또는 '명령'이 모두 가능하므로 제3자의 인수에 관한 '명령'에 한정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29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감독규정에 의하더라도 제47조 제2항 제8호에서 경영개선요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3자 인수계획의 수립'일 뿐 '제3자 인수' 자체는 계약이전과 마찬가지로 제4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상 제3자의 인수에 관하여 취할 수 있는 적기시정조치의 범위와 이 사건 감면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3자의 인수'에 권고 또는 요구에 의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저축은행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저축은행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제3자 인수에 관한 금산법 제10조 소정의 권고·요구 또는 명령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금융감독원의 제3자 인수에 관한 권고 또는 요구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3)항에서와 본 바와 같이 이를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3자의 인수에 관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가) 구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2013. 5. 8.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로부터 10일 이상의 사전의견 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29

출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바(제49조 제1항, 제9항), 이 사건에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 사건 저축은행에 대하여 제3자 인수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거나 사전 의견 제출 절차 등을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다.

나) 을가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2012. 8. 26. 이 사건 저축은행을 포함하여 6개 저축은행의 2012년 3월 현재 BIS비율이 마이너스(-)였다는 내용의 2012. 8. 26.자 연합뉴스 보도에 대하여, '2012년 5월에 영업정지되거나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은 저축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저축은행 등을 제외할 경우 2012년 3월말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모두 초과하였거나 현재 유상증자 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공적자금 지원 등이 없이 자체 정상 영업중인 이 사건 저축은행은 3월 가결산 이후 대주주 교체, 자체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BIS비율이 조치기준(5%)을 크게 상회하였거나 유상증자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저축은행의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적기시정조치 부과 없이 자체적인 경영개선방안을 통해 재무상태를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금융감독원이 이 사건 저축은행에 제3자 인수 및 유상증자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권고 내지 요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가 성실히 이행되는 것을 감독하기 위하여 감독관을 파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서 이 사건 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를 정리한 검사서에 의하면, 검사결과 적발된 사항은 BIS비율 과대산정 이외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재산상 이익 제공', '주택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 초과 대출취급', '개별차주 신용공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29

한도 초과 대출 취급' 등 여러 가지가 있고, 금융감독원은 적발된 사항들에 대하여 '부당이익제공액 환수', '대출 초과 상태 해소' 등 각종 조치를 요구하였는바, 감독관 파견은 2011. 4. 29. 금융감독원과 이 사건 저축은행 사이에 체결된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개선협약'에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서(제4조 제1호) 위와 같이 검사를 통해 적발된 제반 사항에 대한 각종 조치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금융감독원이 적기시정조치로서 특정 제3자의 인수를 요구 또는 명령하고 단지 그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감독관을 파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원고는, 금산법 제10조 제1항에서 금융기관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적기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상호저축은행의 BIS비율이 2% 미만인 경우 감독규정에 의해 금융위원회는 해당 저축은행에 대해 제3자의 인수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해야 하므로, 이 사건 저축은행의 BIS비율이 (-)1.27%로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금융감독원이 인수 및 유상증자를 권고한 것은 금산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산법 제10조 제3항에서는 감독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저축은행의 BIS비율이 2% 미만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반드시 적기시정조치를 하여야만 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금융감독원 또는 파견된 감독관이 이 사건 저축은행에 대해 제3자 인수 또는 유상증자 등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저축은행의 요청에 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29

하여 원고가 그 주식을 인수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영업정지와 같은 적기시정조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것보다는 원고의 주식 인수 및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 사건 저축은행 및 원고의 자발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5)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저축은행 주식인수는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전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수

판사 강효인

판사 장인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29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100분의 10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29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적기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譴責)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引受)
8. 영업의 양도나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기관 임원의 업무집행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29

1. 제10조 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의 인가·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만을 할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 제1항 또는 제12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명령 또는 알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3. 부채(負債)가 자산을 뚜렷하게 초과하여 제10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이나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영업의 인가·허가 등이 취소된 때에는 해산(解散)한다.

제27조(벌칙) 금융기관의 임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이하 "금융기관의 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8조(과태료) ①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10조 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 제5항 및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29

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조 제3호 가목 전단에 따른 경영상태의 실사와 같은 목 후단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와 이행 여부의 점검

● **구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2013. 5. 8.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경영개선요구) ① 금산법 제10조에 따라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제44조 제1항 제1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

2. 제45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46조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영업소의 폐쇄·통합 또는 신설제한

2. 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4. 예금금리수준의 제한

5. 자회사 정리

6. 임원진 교체 요구

7. 영업의 일부정지

8. 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자 인수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29

9. 제46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48조(경영개선명령) ① 금산법 제10조에 따라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1. 제44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미만인 경우

2. 금산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 또는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촉구 등의 조치를 받고 이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고 이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경영개선권고 조치 당시보다 경영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 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 제1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3. 합병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 제3자에 의한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인수

6. 6월 이내의 영업정지

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이전

8. 제4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49조(사전 의견청취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검사, 이 규정 제44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29

는 제4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상호저축은행이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또는 제48조 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 대상에 각각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조치권자는 그 사실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상의 사전의견 제출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상호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의견제출시 자본확충 등 단기간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할 수 있다.

⑨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